

임원 사임공시

당사는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 제7조제3항 및 『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』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원 사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직 위 (상임여부)	성 명	사임일	사 유
이사 (비상임/등기)	김은숙	2019.10.11	사내이사 사임 (일산상의 이유로 의원사임)

주식회사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